2014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(안)

의 안 번호 14-101

제출일자 : 2014, 11,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·설치 대상인 '마포구 보휴회관 신축'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.

2. 사업의 필요성

- 마포구 보훈회관은 1988년 건축된 (구)신수동주민센터를 2011년 4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노후, 누수, 공간협소, 이용불편 문제 잔존
- 공간 협소로 9개 보훈단체 중 2개 단체(월남참전자회, 특수임무유공자회)는 입주하지 못하고 타 건물을 임차중에 있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
- 또한, 입주해 있는 단체도 3개 단체(상아군경회, 전몰군경유족회, 전몰군경마망인회)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사용하고 있어 단체별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음
- 구청장 지시사항(2014.1.9), 부구청장 지시사항(2014.1.16)에 의거 마포구 보훈회관 중축안과 신축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건물노후로 인한 누수문제, 보훈단체의 신축 요구, 타 자치구 수준에 맞는 보훈단체 예우 차원, 신축의 경우 국고 500백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신축안으로 내부결정한 바 있음
-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우리구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의 염원인 보훈회관 신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

3.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 계획

○ 신축개요(안)

- 위 치: 마포구 신수로 58

- 대지면적 : 496m²

- 건물용도 : 마포구 보훈회관

- 건축규모 : 지하1층, 지상4층 / 연면적 1,261㎡

구 분		배 치 (안)				
_	지하1 <u>층</u>	269 m²	체력단련실, 주차장, 기계실, 창고 등			
충 버	지상1층	250 m²	공동회의실, 사랑방, 식당, 관리사무실			
별 현	지상2 층	250 m²	보훈단체 사무실(5개), 교육실			
항	지상3층	250 m²	보훈단체 사무실(4개), 교육실			
0	지상4 층	242 m²	강당			
건축면적		270 m²	(건폐율 54.5%)			
지상연면적		992m²	(용적률 200%)			

○ 사업비: 3,179,587천원

4. 재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

(단위 : 천원)

	21 Ol ul	2015년	2010	2017년	
구 분	사 업 비	구비	국비	구비	구비
총 계	3,179,587	128,157	500,000	1,019,391	1,532,039
	2,939,391		500,000	939,391	1,500,000
설계비	128,157	128,157			
감리비	32,039				32,039
철거비	80,000			80,000	

※ 국비 지원: 5억원 (서울지방보훈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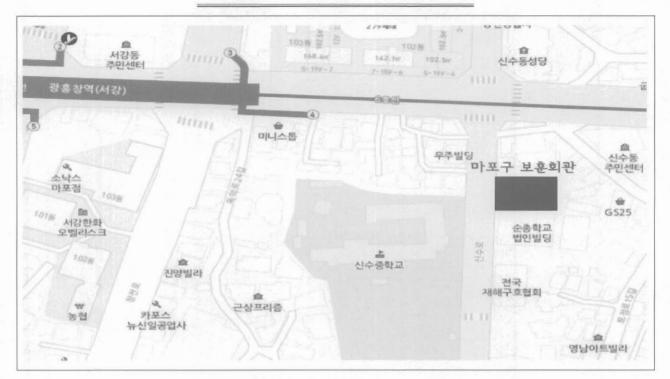
5. 법적 근거

- O 지방자치법(법률 제12280호, 2014.1.21) 제39조
- O 지방자치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4859호, 2013.11.20) 제36조
-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(법률 제12201호, 2014.1.7) 제10조
-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4631호, 2013.6.21) 제7조
- O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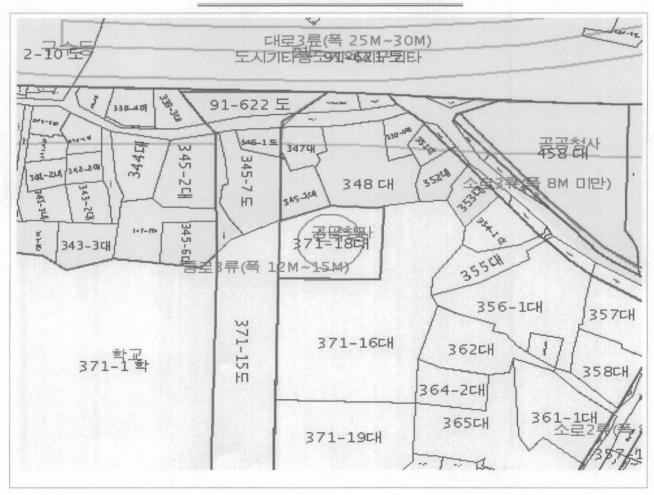
6. 향후 추진계획

 구 분	추 진 일 정	비고
설계발주 및 설계용역 계약 등	2015. 3. ~ 5.	
기본 및 실시설계	2015. 6.	
공사발주	2016. 3.	
 공사완료	2017. 12.	

위 치 도



토지이용계획 도면



현 장 사 진



사진 설명 현재 마포구 보훈회관 전면 사진

201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11-1)

(단위 : m', 천원)

			상	Ħ,	<u>.</u>	7]	ठे-	빈	: 7]	ŏ		계	
	구 	분	건수	수량	금	액	건 수	수량	금 액	건 수	수량	금 액	비고
		토 지 건 물 기 타											
	계	토 지 건 물 기 타											
취		토 지 <u>건 물</u> 기 타					1	1	3,179,587	1	1	3,179,587	
-	1. 매 입	토 지 건 물 기 타											
득	2. 교환으로 취득	기 타											
	3. 기타 취득	토 지 건 물 기 타 토 지											
	0. 7 9 1 1	<u>건물</u> 기타					1	1	3,179,587	1	1	3,179,587	
	계	토 지 건 물 기 타											
처	4. 매각	토 지 건 물 기 타											
분	5. 양여	토건 타지물 건지로	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분	토 지 건 물 기 타											

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11-2)

(단위: m², 천원)

일련		재	산	丑	시	1 -1 all		aru o	, I) =
번호	지 목	소	재	지	수 량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म् ज
001	건물	마 포 구 (신	신수: <u></u> 신수동)	로 58	1 (496m²)	3,179,587 (공사비, 건설시업 관리비, 설계비 등)	2016. 3월 착공 ~ 2017.12월 완공	신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적용

- 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 - 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 - (4) 기타 작성요령은 "양식 11-4"를 참조

검토보고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	재무과	1

(2014. 12. 2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[전문위원 김 은 모]

[검토보고]

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

1. 안 건 명

○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출일자 : 2014년 11월 17일(월)

○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○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21일(금)

4. 관련근거

- ○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
- ○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5. 제출이유

동 관리계획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·설치 대상인 '마포구 보훈회관 신축'을 위하여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6. 사업 주요내용

□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

○ 동 계획안은 1988년 건축된 마포구 신수로 58 (구)신수동주민센터(지하1층, 지상2층, 연면적 567.3㎡)를 건물노후 및 이용공간 부족으로 이를 철거하고 동 소재지에 마포구 보훈회관(지하1층, 지상4층 연면적 1,261㎡ 규모의 건물을 사무실, 교육실, 공동회의실, 체력단련실, 강당 등으로 사용)을 새로 신축하여 보훈단체(9개 단체)가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임.

○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 계획(안)

- 위 치 : 마포구 신수로 58

- 대지면적 : 496㎡(150평)

- 건물용도 : 마포구 보훈회관

- 건축규모: 지하1층, 지상4층 / 연면적 1,261 m²(382평)

 구 분		배 치 (안)				
	지하1층	269 m²	체력단련실, 주차장, 기계실, 창고 등			
충 범	지상1층	250 m²	공동회의실, 사랑방, 식당, 관리사무실			
별 현	지상2층	250 m²	보훈단체 사무실(5개), 교육실			
단 항	지상3 층	250 m²	보훈단체 사무실(4개), 교육실			
	지상4 충	242 m²	강당			
건축면적		270 m² (건폐율 54.5%)			
지상연면적		992 m² (용적률 200%)			

○ 사 업 비 : 3,179,587천원

○ 재원별 예산계획 및 확보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사 업 비	2015년	201	2017년	
T 包	기월미	구 비	국비	구비	구비
총 계	3,179,587	128,157	500,000	1,019,391	1,532,039
공 사 비	2,939,391		500,000	939,391	1,500,000
설계비	128,157	128,157			
감리비	32,039				32,039
철거비	80,000			80,000	

※ 국비 지원 : 5억원 (서울지방보훈청)

[검토의견]

- 마포구 보훈회관은 1988년 건축된 (구)신수동주민센터를 2010. 12월 보훈회관으로 구조 변경 공사를 한 후 2011. 3. 21. 상이군경회 외 6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곳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, 동 건물은 건축한 지 26년이 경과한노후 건물로 누수는 물론 회원들 대부분이 연로(회원 약 4,200명 중 약 90%가60대 이상노인임)하고 장애인이 많아 현재 층계로 되어 있는 동 건물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고.
- 또한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입주 단체 중 3개 단체(상이군경회, 전몰군경유족회, 전몰군경미망인회)가 1개의 사무실을 공동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, 9개 보훈 단체 중 2개 단체(월남참전자회, 특수임무유공자회)는 입주하지 못하고 타 건물을 임차 중에 있어, 비입주 단체 회원들이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임.
- 본 건물은 1988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어 총 3회 (2011. 3. 31. 리모델링 공사비 2억 8,500만원, 2013. 4. 7. 계단수리 공사비 315만원, 2013. 6. 13. 옥상방수 공사비 968만원 등)에 걸쳐 총 공사비 2억 9,783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현재도 벽체에 금이 가고, 누수가 되고 있고 지하에서는 물이 새는 등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비용절감 면에서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됨.
- 그러나 보훈회관은 국가보훈처에서 신축 시 5억원의 국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어야 마땅하나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립비 총 32억원 중 85%인 27억이 마포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으로
 - 1) 먼저 국가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국비보다 구비를 예산에 먼저 반영해야 하는 지
 - 2) 보훈회관 신축계획 시 관내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보훈회관 이용대상 단체는 더 이상 없는 지, 이용 대상 국가 유공자 단체 및 회원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

- 3) 또한 보훈회관은 건물 준공이후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 구예산 지원이 필요하나, 최근 구예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본 건물에 대한 용도와 위치에 따른 수익성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
- 다만, 마포구 보훈회관의 신축건립은 국가 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며 현재 우리 구 보훈 단체 회원은 타 자치구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훈회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 자치구 보훈단체 회원 수준에 걸맞는 형평성 있는 예우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 마포구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가족에게 보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 계 법 규

지방자치법 [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. 타법개정]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
- 2. 예산의 심의 · 확정
- 3. 결산의 승인
-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- 5. 기금의 설치 · 운용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
-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
-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-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- 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대통령령 제25751호, 2014.11.19. 타법개정]

- 제36조(중요 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"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을 말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 -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"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·증설, 용도폐지·변경 및 공공시설 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.
-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이 나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[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, 타법개정]

-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독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 - 관리계획 : 취득에 관한 계획, 처분에 관한 계획
 - 관리계획 변경 : 취득에 관한 변경. 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
 - 취 득 : 매입, 기부체납, 무상 양수, 환지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중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
 - 처 분 : 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5751호, 2014.11.19. 타법개정]

재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ㆍ중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맡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- 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1. 사업목적 및 용도 2. 사업기간 3. 소요예산 4. 사업규모
- 5. 기준가격 명세 6. 계약방법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1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
- 2. 「도시개발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
- 3.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
-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득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가목·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·처분
- 5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
- 6.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
- 7.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
- 8. 「지방세법」 제117조에 따른 물납
- 9.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
- 10.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
- 11.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·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
- 12.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

참고자료

■ 마포구 보훈단체 현황 : 9개 단체(4,282명)

연번	단체명	지회장	회원수	비고
계	계		4,282명	
1	대한민국상이군경회마포지회	윤석만(44.9.13)	700명	
2	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마포지회	최길순(50.5.2)	352명	
3	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마포지회	하복덕(50.3.21)	320명	
4	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마포지회	안종원(40.3.19)	658명	
5	6.25참전유공자회마포지회	박승모(34.1.5)	926명	
6	광 복 회	손기태(50.10.4)	69명	
7	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마포지회	조광현(47.8.3)	546명	직무대행
8	월 남 참 전 유 공 자 회 마 포 지 회	신호철(44.8.1)	693명	
9	특 수 임 무 유 공 자 회 마 포 지 회	전영복(66.1.25)	- 18명	